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9-101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l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연제구 창조도시과(☎665-480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29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109	거제동 766-31번지	거제동 761-4번지	-		

○ 도로 결정 사유서

도 로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소로3-29	·노선신설 L=109m B=6m	· 가로구역이 정비된 주변지역에 비해 대상지 내부 도로 미개설로 주민자력 개발동력이 상실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로 개설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함.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거제동 766-76번지 일원	-	증) 984	984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주차장	·주차장신설 A=984㎡	· 대상지내 주차장 부족으로 급경사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 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신설함.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